

장애인

-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
-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
-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
-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
- 보조공학기기 지원



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

보건복지상담센터
129



- 지원대상** •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영역에서 '심화평가 권고'로 판정된 영유아
- 핵심내용** •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(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)
 ※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, 상급병실료 차액, 특진비 등은 제외

기초수급(의료·기초·주거)자 및 차상위계층	건강보험료 가입자
최대 40만 원	최대 20만 원

- 올해 3~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,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까지 신청한 경우

이용방법



※ 발달 정밀검사 기관 찾기: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 → 건강IN → 검진기관/병원 찾기 → 병(의원) 정보 →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

- 문의처** • 관할 지역 보건소
 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

■ 보건복지상담센터
129



지원대상 •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·군·구에 등록된 장애인

핵심내용 • 전동휠체어,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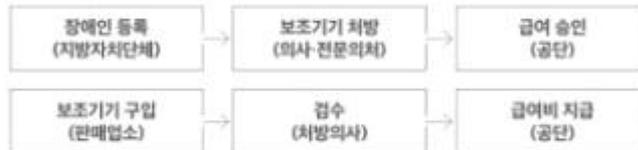
보조 기기	8분류 78품목	의자·보조기, 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 등
	소모품 12품목	전동휠체어·전동스쿠터용 전지, 넓적다리, 무릎관절, 종아리, 발목의지 소켓(일반형, 실리콘형), 실리콘 라이너

• 구입 금액 90%까지 지원(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,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)

※ 전동보조기기(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, 이동식전동리프트), 자세보조용구

- 기준금액, 구입금액,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% 지급

※ 차상위 1·2종(회귀난치성질환자,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): 100% 지급



처방전 불필요	지팡이, 목발, 힌지팡이, 전지
승인 대상	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이동식전동리프트, 자세보조용구, 휠체어(활동형, 틸팅형, 리클라이닝형)
검수 대상	의자·보조기(소모품 포함), 맞춤형교정용신발, 의안, 저시력보조 안경 및 콘택트렌즈, 보청기, 개인용 음성증폭기, 자세보조용구

이용방법 • 방문 및 우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

문의처 •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

•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

보건복지상담센터
129



- 지원대상**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
 - ※ 자격제한: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용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 제한자(금융채무불이행자, 신용회복 중인 자, 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자)인 경우

핵심내용

구분		핵심내용
대여 조건	무보증대출	가구당 1,200만 원 이내 ※ 기존 대출금 2,000만 원 이하,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능
	담보대출	담보 범위 내 5,000만 원 이하
대여목적		생업자금·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·기술훈련비 등 ※ 생활가계자금, 주택전세자금, 학자금 등의 용도로 용자 불가
금리		고정금리 연 2.0%(5년 거치, 5년 분할 상환) ※ 2021년 1분기 이전 대여자는 연 3.0%

- 이용방법**
-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

문의처
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※ 금융기관(국민은행)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장애인 창업점포 지원

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창업지원부

02-2181-
6536



- 지원대상**
- 2025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(업종전환희망자) 및 초기 창업자(창업 3년 미만)
*기초교육, 역량강화교육, 재기, 협동조합교육, 시각장애인 창업교육
 - 총 30명(예비창업 및 재창업 18명, 초기창업 5개 사 예정)
- 핵심내용**
- 임차보증금: 1억 3,000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
- 이용방법**
-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방, 등기우편, 이메일 접수
※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(www.debc.or.kr)에서 확인 가능
- 문의처**
-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
(☎02-2181-6536, www.debc.or.kr)
 -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창업 임차보증금
최대

1억 3,000만 원



보조공학기기 지원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1588-1519



- 지원대상**
-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
 -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
 - ※ 민간기업 공공기관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 포함
 - 장애인인 사업주(4인 이하로 장애인 고용 전제)
- 핵심내용**
-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용 보조공학기기의 구입 및 대여비용 지원

	구분	핵심내용
보조공학기기 제품 구입 및 대여 가격 (맞춤형 기기 포함)	130만 원 이하	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%
	130만 원 초과	130만 원의 90%+(보조공학기기 가격-130만 원)×95%
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		보조공학기기 가격의 100%

※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 대상자 부담

- 이용방법**
- 온라인 신청: (사업주) www.esingo.or.kr, (장애인) hub.kead.or.kr, (사업주·장애인) <https://atkeadshop.co.kr>
 - 방문 및 우편 신청: 근무지 관할 공단지역본부·지사
- 문의처**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(☎1588-1519)